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 부정행위 시 임용취소 규정 마련〉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1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9.
3. 회부연월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5).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및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u>임용</u> 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u>제11조의3</u> 을 준용한다.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 ----- <u>임용 및 임용취소</u> 에----- ----- <u>제11조의3 및 제11조의5</u> 를-----.

기존 법령은 대학교원의 임용에 대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원의 채용과 비교하여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 왔으며, 교사와 달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발의되었으며, 2025.2.27.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된바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조항 중 제11조의3²⁾을 준용하나, 제11조의

1) 의안번호 제2201745호,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53)는 준용하지 않게 됨.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5도 준용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 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규정⁴⁾할뿐,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립대학에는 대학인사위원회 에 상응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안을 수정할 필요⁵⁾가 있다는 입장임.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5)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88